

KIEP 전문가 발표회 발제 자료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및 논의 현황과 전망

고준성 (KIET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2016.10.7

목 차

I 서비스통상규범에서 국내규제의 의의

1. 국내규제의 의의
2. 서비스통상규범에서의 국내규제의 규율 배경

II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및 논의 현황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4. 서비스 FTA에서의 국내규제 규정 현황
5. TiSA 국내규제 부속서 협상 현황

III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국내규제와 TPP 규제 조화 챕터 간의 관계

1. TPP 규제 조화 챕터의 도입 배경
2. TiSA 국내규제 부속서와 TPP 규제 조화 챕터간의 차이
3. TPP 규제 조화 챕터의 주요 내용
4. TPP 규제 조화 챕터의 평가 및 영향

I

서비스통상규범에서 국내규제의 의의

1. 국내규제의 의의

1 국내법상 국내규제의 정의

-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즉, 국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

1. 국내규제의 의의

2 WTO GATS에서의 국내규제의 의미

- WTO GATS에서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두고 있지 않음.
- 대신에 GATS 제6조(국내규제) 1항에서는 시장개방을 약속한 분야에 있어 국가에 의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라고 언급
- GATS 제6조 4항에서는 국내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가리킨다고 규정

2. 서비스통상규범에서의 국내규제의 규율 배경

1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국내규제의 관계

□ GATS하에서의 서비스무역자유화 약속

-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무역규범인 GATS 체제하에서 WTO 회원국은 UR 서비스무역자유화협상 결과 각 회원국이 제출한 구체적 약속을 담은 국별 양허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를 통해 자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약속을 하였음.
- 이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업종)에 대해 추가로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없음.

2. 서비스통상규범에서의 국내규제의 규율 배경

1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국내규제의 관계

□ GATS하에서의 회원국의 국내규제 권한 인정

- 한편, GATS 전문에서는 국가의 정책 목표(national policy objective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 영토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국내규제 권한을 인정
- 그러한 국가 정책목표는 소비자 보호, 소득이나 주거지와 관계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형평한 이용(가령, 통신, 교통 및 보건서비스 경우), 시장지배나 반경쟁관행의 방지, 국민보건 등 다양하기 마련
- 가령, 의사와 같은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면허 제도에 따른 규제는 '환자라는 소비자의 보호' 내지 국민보건이라는 정책목표에 해당될 것

2. 서비스통상규범에서의 국내규제의 규율 배경

1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국내규제의 관계

□ 서비스무역 자유화약속과 국내규제간의 관계

- GATS 체제하에서 각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를 통해 특정 서비스분야(업종)에 대해 시장개방이 약속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따라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가 당해 서비스분야(업종)에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각 회원국이 해당 서비스분야(업종)에 갖고 있거나 새로이 도입되는 국내규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환언하면, 각 회원국의 양허표를 통해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서비스분야(업종)에서도 합법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규제가 그러한 개방된 서비스분야(업종)에 있어 자유로운 무역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 ⇒ 이와 같이 국가정책의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규제는 인정되나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교역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바로 이 점에서 서비스통상규범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

II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및 논의 현황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1 국내규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할 것

- GATS 제6조 1항에서는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2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규율을 제정할 것

- GATS 제6조 4항에서는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적절한 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자격요건과 절차(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및 면허요건(licensing requirements)*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disciplines)을 수립하도록 규정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3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가지 기준 제시

○ GATS 제6조 4항에서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율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의 보장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

- (a)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b)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 (c)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4 GATS 제6조는 국내규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율이 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할 임시적 경과조치임을 명시

- 제6조 5항 (a)호에서는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제6조 4항에 따른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i) 제6조 4항 (a), (b), (c)에서 제시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이나 (ii) 당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회원국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동 (b)호에서는 이러한 의무규정에 대한 합치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

1. GATS에서의 국내규제에 대한 규율: GATS 제6조

4 GATS 제6조는 국내규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율이 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할 임시적 경과조치임을 명시

- 상술한 GATS 제6조 5항 (a)호는 아직 서비스분야 국내규제의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실질적 규율을 담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상술한 GATS 제6조 5항 (a)호(i)에서는 동조 4항상 제시된 기준을 수용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4항상 제시된 3가지 기준 역시 추상적인 것이어서 회원국의 분야별 국내규제가 이러한 기준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계
- 더욱이 GATS 제6조5항(a)(ii)의 규정은 UR 협상 당시 기존의 모든 제한적인 조치를 실상 용인하는 일종의 "grandfather 조항"으로 볼 수 있어 국내규제의 규율의 효용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1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 출범 경위

- GATS 제6조 6항에서는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각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의 전문직업인 자격을 검증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 1993년 12월 15일 채택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서 따르면 GATS 제6조 4항에 규정된 작업계획을 즉시(immediately) 시행하고, 이를 위해 “전문직서비스작업반(Working Party on Professional Services: ‘WPPS’)”을 설치할 것과 WPPS가 특히 회계분야에서의 다자간 규율 제정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함.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2 1998. 12. 14.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 채택

- WTO 서비스무역이사회는 1998년 12월 14일 “회계분야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Disciplines on Domestic Regulation in the Accountancy Sector: 이하 ‘1998년 회계분야 규범’)”을 채택
 - 동 규범을 채택하면서 서비스무역이사회는 동 규범이 WTO 회원국중 자국의 양허표에서 회계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을 포함시킨 회원국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채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협상의 차기 라운드 종료 이전에 GATS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야만 함을 밝힘. 따라서 1998년 회계분야 규범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임.
 - 다만, 동 이사회 결정에 포함된 현상유지(standstill) 규정에 따라 상기 규범이 채택된 1998년 12월 이후 WTO 회원국들은 동 규범에 저촉되는 회계분야에서의 국내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금지됨.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3 1998. 12. 14.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내용 및 의의

○ 1998년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은 8개 부분으로 구성

- (i) 국내규제의 국제적 규제의 틀을 구성하는 원칙들에 관한 부분
 - 목적(Objectives)
 -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필요성 심사 포함
 - 투명성(Transparency)
- (ii) 국내규제의 구성 요소
 - 면허요건(Licensing Requirements)
 - 면허절차(Licensing Procedures)
 - 자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s)
 - 자격절차(Qualification Procedures)
 -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3 1998. 12. 14.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내용 및 의의

- 핵심 규정을 살펴보면, (i) '규범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1998년 규범 제1항에서는 GATS 제6조의 규정은 동 제16조(시장접근)와 제17조(내국민대우)의 범위에 속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
- 이는 GATS 제16조 및 제17조의 적용은 각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 결과에 따라 GATS Part III(Specific Commitments)에 의해 규율되는 것임.
- . 환언하면, 1998년 회계분야 국내규범의 규율 대상이 되는 회계분야 국내규제는 GATS 제16조 및 제17조의 대상이 되는 국내규제와 중복되는 것이 아님

2 WTO 전문직서비스작업반(WPPS)에서의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채택 성과

3 1998. 12. 14.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내용 및 의의

- (ii) ‘필요성 심사’와 관련하여 1998년 회계분야 규범 제2항에서는 규제조치가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무역에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소위 “필요성 심사(necessity test)”에 대해 규정함.
- 이와 같이 명시된 정책의 정당한 목적의 예로서 소비자 보호, 서비스의 질[수준] 유지, 전문직종사자로서의 능력(professional competence), 직업윤리(integrity of profession)의 확보 등을 예시
- (iii) ‘투명성’과 관련하여 1998년 회계분야 규범 제5항에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이 규제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도록 규정함. 또한 동 제6항에서는 교역 상대 회원국에게 제안된 규제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1 GATS WPDR의 출범 배경 및 작업 경위

- 1999년 2월 개최된 WPPS 회의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일관되고 통합된 규범 마련을 위해 WPPS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WTO 서비스무역위원회는 1999년 4월 26일 논의 대상을 전문직서비스에 한정된 WPPS를 폐지함. 대신에 WPPS의 기존 논의 영역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 논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규제 작업반(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이하 'WPDR')을 설치하기로 결정
- 동 작업반은 2011. 4. "Progress Report"(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Draft: Disciplines on Domestic Regulation"(이하 '2011년 국내규제 규범 초안')이 포함되어 있음.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2 GATS WPDR의 그간의 진전 상황

- 국내규제의 국제적 규제 틀을 구성하는 원칙들에 관한 부분과 국내규제의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전자에 속한 GATS 제6조 4항에 따른 자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s) 및 절차, 면허(licensing) 및 절차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 등 5개의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규정이 사실상 단일 조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일부 규정은 단일안이 마련되었거나 복수의 대안이 검토 중에 있는 등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됨.
- 이는 상술한 5개의 국내규제 구성 요소들에 관한 사안들은 대체로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기술표준에 관한 성과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은 것을 주목할 필요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2

GATS WPDR의 그간의 진전 상황

- 다음으로 WPDR에서의 후자의 국내규제의 국제적 규율의 틀을 구성하는 원칙들(basic principles)에 관한 논의의 경우 크게 국내규제에 대한 다음의 4개 기본원칙 즉, 필요성(necessity), 투명성(transparency), 동등성(equivalency),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 중에서도 필요성 심사와 투명성 이슈가 핵심 이슈로서 다루어져 왔음.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2

GATS WPDR의 그간의 진전 상황

- (i) 투명성(transparency)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핵심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양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됨.
- 2011년 국내규제 규범 초안 제13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면허요건 및 절차, 자격요건 및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물론 이들 조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인쇄 또는 전자수단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정보에 포함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공표가 곤란한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당해 정보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2

GATS WPDR의 그간의 진전 상황

- (ii) 필요성 심사(necessity test)는 국내규제가 특정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내규제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핵심장치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필요성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필요성 심사 형태의 규범적 기준을 국내규제 규범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조차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 GATS 국내규제작업반(WPDR)의 출범 및 논의 현황

2

GATS WPDR의 그간의 진전 상황

- (iii) 동등성 원칙은 서비스공급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 및 경험을 고려해 주도록 규정함.
- (iv)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채택이 임박한 경우 그러한 국제표준이 국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효과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기술표준을 입안함에 있어 그러한 국제표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4. 서비스 FTA에서의 국내규제 규정 유형

- 첫째, 서비스 FTA의 국내규제 조항에서 GATS 제6조를 차용하여 규정하는 유형임. 이 경우 당해 서비스 FTA를 통해 국내규제 규율에 있어 GATS와 어떠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변화가 없게 됨.
- 둘째, 당해 서비스 FTA의 국내규제 조항을 통해 GATS 제6조에서 규정된 내용 중 일부만을 규정하는 'GATS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면서 동시에 GATS 6조에 없는 규정을 일부 포함하는 'GAT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기도 하는 유형이 있음.
- 셋째, FTA (국경간)서비스무역챕터에서 국내규제에 대한 규정 대신에 면허 및 증명서 발급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FTA 유형이 있음.

5. TiSA 국내규제 부속서 협상 논의 현황

○ TiSA 국내규제 규정 구성: TiSA 기본문서 X조(국내규제) + 동 국내규제 부속서

TiSA 국내규정 규율 사항 현황
국내 규제 주권 인정
규정의 적용대상
서비스무역영향 조치의 합리적,객관적,공평 시행
실체적 의무(1): 필요성 심사, 절차적 공정성 등
잠정적 실체적 의무(2)/ 다자협상 결과 반영
행정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보장
합리적 인가신청 기간
검사 주기 등
전자양식 도입
사본 접수 원칙
인가수수료
처리일정제공
신속한 신청처리
합리적 기간내 신청처리
주무당국의 신청 정보 제공
거부된 신청 처리
인가 효력
기술표준 채택절차의 투명성
인가 정보의 투명성

III

서비스무역규범에서의 국내규제와 TPP 규제 조화 챕터 간의 관계

1. TPP 규제 조화 챕터의 도입 배경

-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작업장의 안전 및 다른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규제 환경 및 제도가 국가에 따라 큰 차이
 - 또한 아시아-태평양 권역 국가들의 규제 환경 및 제도는 상당히 다양하여 이 지역 정부들은 상이한 규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특정 규제 이슈들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정부는 TPP협정 안에 “규제 조화”(REGULATORY COHERENCE)챕터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에게 TPP 회원국 내에서 개방된, 공정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이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

1. TPP 규제 조화 챕터의 도입 배경

- 이 점에서 TPP 규제 조화 챕터(제25장)에서도 (i)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증대 그리고 투자의 증대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규제 조화를 통하여 본 협정의 혜택을 지속하고 향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규제 조치의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반영 및 당사국들 간의 규제 협력 및 역량 배양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
- 협정 제25장의 목적상 규제 조화[일관성](Regulatory Coherence)란 국내 정책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조치를 기획, 설계, 공표, 이행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정책 목적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역 및 투자, 경제 성장과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서 우수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의 이용을 의미

2. TiSA 국내규제 부속서와 TPP 규제 조화 챕터간의 차이

- TPP 규제 조화는 국가가 갖는 규제 주권에 따른 모든 행정 영역에서의 규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비해 TiSA 국내규제부속서는 제II-1조(MA약속양허)및 제II-2조(NT약속양허)의 조건, 제한 또는 자격 요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당사국이 제I-3조(MA) 또는 제I-4조(NT)에 따라 이행한 약속과 관련하여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에 대한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 한편, TiSA 국내규제 부속서나 TPP 규제 조화 챕터 모두 국가가 갖는 국내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짐.

3. TPP 규제 조화 챕터에서의 규제조화 촉진을 위한 장치 규정

- 1) 조정 및 검토 절차 또는 메커니즘
- 2) 핵심 우수 규제 관행(Core 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의 시행
- 3) 규제조화위원회
- 4) 이해관계자의 참여
- 5) 이행 통지
- 6) 협력

4. TPP 규제 조화 챕터의 평가 및 영향

- TPP협정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 조화 챕터는 핵심 우수 규제 관행(Core Good Regulatory Practices)의 시행을 권장함. GRP와 관련하여 제안된 적용 대상 규제 조치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것, 일반이 신규 규제조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기존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당해 조치가 그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할 것 등을 요구
- 이들 규정은 미국의 규제절차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적법절차 및 조화로운 규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과 같은 제반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

4. TPP 규제 조화 챕터의 평가 및 영향

- 또한 당사국들 간의 국제 차원에서 규제일관성위원회의 설치, 이행의 통지 및 국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도 주목
 -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기회와 더불어 우수 규제 관행을 기초로 입안되고 시행되며 부처 간에 조정되는 일관된 규제절차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활동하는 TPP 참가국 기업들에게 공개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 다만, 규제 조화 챕터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 TPP 참가국들이 규제를 개발하는 전반적인 절차 내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

4. TPP 규제 조화 챕터의 평가 및 영향

- 이밖에 TPP 규제 조화 챕터가 각 참가국의 자신의 규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시행할 권한을 재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챕터가 향후 모범 규제 관행의 영향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감사합니다